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의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7월 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
3. 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이 2021. 10. 8. 법률 제18471호로 일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되며 신설된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인 대상 무상교육의 법적 토대가 확보되었음.
-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도민 대상 교육과정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도민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도민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- 공익상 필요한 경우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도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은 1969년부터 도민교육을 실시를 해왔으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도민교육 운영 시 유사한 내용의 「충청북도 평생학습진흥조례」를 근거로 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해왔음.
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이 일부개정되며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교육훈련시설을 무상(無償)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23조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음.
-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도민대상 무상교육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·시행되고 있는 곳은 강원, 충남, 전남, 경남, 전북 총 5곳임.

《 타 시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》

	지역명	조례명	제정일
1	강원도	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	2022-10-14
2	충청남도	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	2022-10-18
3	전라남도	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	2022-04-07
4	경상남도	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	2022-07-07
5	전라북도	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	2023-03-31

-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도민교육 무상 운영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, 도민교육 운영,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조 문	규 정 사 항	조 문	규 정 사 항
제1조	목적	제4조	도민교육 운영
제2조	정의(도민, 도민교육)	제5조	지원
제3조	도민교육 운영계획	부 칙	조례 시행일
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도민”과 “도민교육”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음.
-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충청북도 “도민교육 운영계획”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운영계획에는 교육훈련 기본목표와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4조는 도지사는 도민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△국정·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 및 학습, △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, △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, △지역 역사·문화·환경의 보전(保全) 및 이해 교육, △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 정책에 대한 교육, △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 같이 “공익상 필요한 경우”에 무상으로 도민교육을 실시할

수 있다고 규정함.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민간인 대상 무상교육 시행 대상이 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였는바, “도민교육 운영”에 필요한 조문 내용임.

다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운영 시 무상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고,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를 거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.
- 이로써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도민 대상 교육과정의 무상교육 시행에 관한 법적 토대가 확보되었는바, 향후 도민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.

붙임: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. 끝.